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2024년 1차 운영위원회

○일시: 2024년 4월 18일(목) 16:00~18:00

○장소: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성원확인

번호	구분	이름	소속	직책	참석
1	마포구	최은하	마포구의회	의원	
2		홍지광	마포구의회	의원	
3		장혜경	고용협력과	과장	
4	지역사회	윤성일	(사)마포공동체경제 모아	이사장	
5		최은주	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	센터장	
6	노동	전성배	라이더유니온	지회장	
7		강호민	법무법인 오월	대표변호사	
8		정윤각	공인노무사		
9	수탁기관	조영권	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	센터장	
10		정경섭	민중의집	대표	

안건상정

1. 보고안건

- 1-1. 2024년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·수탁 결과 보고
- 1-2. 2024년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보고

2. 의결안건

- 2-1.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칙 일부 개정

3. 기타안건

보고안건 1-1. 2024년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·수탁 결과 보고

1.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2. 경과

-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: 2024. 1. 19.
-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: 2024. 2. 7.
-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: 2024. 3. 14.

3. 사업개요

- 사업명: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
 - ① 소재지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18 마포창업복지관 305호(상암동)
 - ② 시설규모 65㎡(사무실, 상담실)
- 위탁기간: 2024. 4. 13. ~ 2025. 4. 12.(1년)
- 사업내용
 - ①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
 - ②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
 - ③ 근로법률 상담 및 교육
 - ④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⑤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
 - ⑥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
 - ⑦ 그밖에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위탁금액: 336,224천원

보고안건 1-2. 2024년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 보고

1.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

1)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 - '22~'24년 계속 사업

○ 취지

- 기후위기로 여름철 폭염 대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
- 특히 땀별 아래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에게 폭염은 안전과 건강에 직결
- 이에 이동노동자에게 생수(얼음물)를 제공하여 이동노동자가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고자 함

○ 개요

- (주)롯데칠성음료 후원으로 이동노동자에게 생수(얼음물) 2,000병 제공
-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거점 연계, '마포구 얼음물 지도' 제작

○ 캠페인

- 일시: 2024년 7월
- 장소: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앞
- 공동주최: 마포구,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, 수도권기상청 등
- 후원: (주)롯데칠성음료

○ 생수(얼음물) 배포 기간

- 2024년 7월~8월(소진 시 종료)

2)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 - '22~'24년 계속 사업

○ 취지

- 배달노동자를 위한 안전 및 역량강화 제공
- 이륜차(오토바이) 자가정비 또는 사고대응 교육

○ 개요

- 일시: 2024년 하반기
- 장소: 미정
- 내용: 사고 대비 자가정비 또는 사고 대응(손해사정사) 교육

2. 청소년노동자 지원사업

1) 청소노동자 한마당 - '24년 신규 사업

○ 취지

- 마포구 취약노동자 중 청소노동자 조직 지원
- 청소노동자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자조모임 형성 도모

○ 개요

- 일시: 2024년 5월 3일 16:00
- 장소: 마포여성동행센터 1층 카페
- 내용: 공감과 힐링, 놀이 워크숍
- 대상: 아파트 청소노동자 30명

2) 청소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- '24년 신규 사업

○ 취지

- 청소노동자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

○ 개요

- 일시: 2024년 6월
- 장소: 미정
- 내용: 근골격계 재활 운동 또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

3. 요양보호사 지원사업

1)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- '24년 신규 사업

○ 취지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필수 노동자로 자리매김
- 그럼에도 최저임금 수준, 이용자 갑질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
- 이에 실태조사로 마포구 관내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○ 개요

- 조사대상: 관내 방문요양보호사 200명
- 조사방법: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후 취합
- 조사기간: 6~7월

- 심층면접조사(F.G.I.): 설문조사 참여한 요양보호사 중 20명
- 조사내용: 근로계약, 근로조건, 보수교육, 처우개선 요구 등

4. 경비노동자 지원사업

1) 경비노동자 노동인권교육 - '21~'24년 계속 사업

- 취지
 -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향상 및 조직 지원
- 개요
 - 일시: 2024년 2월~4월
 - 참석: 관내 아파트경비노동자 80명

2) 경비노동자 힐링나들이 - '23~'24년 계속 사업

- 취지
 - 경비노동자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
- 개요
 - 일시: 2024년 5월 30일, 31일 11:00~15:00
 - 장소: 마포구 월드컵공원
 - 내용: 산책 및 공동체 프로그램

3) 초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사업 - '21~'24년 계속 사업

- 취지
 - 관내 아파트경비노동자 52.9%가 3개월짜리 초단기계약(2020년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)
 - 고용불안과 입주민 갑질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본 원인인 초단기계약 근절을 위해 노력
- 개요
 - 아파트 입주자대표 교육 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교육 포함
 - 용역회사 표준계약서 도입
 -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경비노동자 고용 현황 고려

5. 기타

1) 2024년 마포구 노동인권영화 공동체상영회 - '22~'24년 계속 사업

- 취지

-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영화 공동체상영회 개최
- 마포지역 44개 기관 및 단체 공동주최로 노동인권문화 확산

○ 개요

- 일시: 4월 27일(토) 14:00
- 장소: 마포구 가족센터
- 상영작: 나의 올드 오크(드라마, 113분, 감독 켄 로치)
- 내용: 영화 상영 및 이야기마당

2) 2024년도 노동으로 세상읽기 - '22~'24년 계속 사업

○ 취지

- 노동을 둘러싼 여러 사회 쟁점과 이슈를 전문가 특강으로 알아봄
- 이를 통해 노동자 시민으로 인문사회 소양을 습득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함

○ 개요

- 일시: 2024년 하반기
- 장소: 미정
- 내용: 노동, 사회, 인문 등 분야

의결안건 2-1.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칙 일부 개정

[주문사항]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6조(운영위원회 의결사항)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의결해주시시오.

1) 의안명

-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정 일부 개정

2) 취지

- ‘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한 예규(2023. 10. 인사혁신처)’에 따라 경조사 휴가 조항을 개정
- ‘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(서울특별시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)’에 따라 제수당 증명절휴가비 조항을 개정함

3) 주요내용

- 제33조(경조사 휴가) 개정
- 제43조(제수당) 개정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칙 일부개정안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(경조사휴가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.

1. 본인의 결혼: 5일
2. 자녀의 결혼: 1일
3. 배우자의 출산: 10일
4. 본인,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: 5일
5. 본인,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: 3일
6.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: 3일
7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의 사망: 1일

제43조(제수당) 제수당은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, 정액급식비,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구성하되, 퇴직자의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.

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%씩 연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3조(경조사휴가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인의 결혼: 5일 2. 자녀의 결혼: 1일 3. 배우자의 출산: 10일 4. 본인,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: 5일 5. 본인,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: 2일 6.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: 2일 7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의 사망: 1일 <p>제43조(제수당) 제수당은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, 정액급식비,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구성하되, 퇴직자의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50%씩 연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	<p>제33조(경조사휴가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인의 결혼: 5일 2. 자녀의 결혼: 1일 3. 배우자의 출산: 10일 4. 본인,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: 5일 5. 본인,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: 3일 6.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: 3일 7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의 사망: 1일 <p>제43조(제수당) 제수당은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, 정액급식비,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구성하되, 퇴직자의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%씩 연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